

무배당 AXA간편상해보험2601 상품요약서

◎ 문답식 상품해설 Q&A

Q) 이 상품만의 특이사항은 무엇인가요?

A) “간편고지” 상품으로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 일반고지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간편고지 상품은 일반고지보험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Q) 이 상품의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보험나이에 따라 보험료가 상이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험나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 끝수는 1년으로 계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13년 4월 20일 청약하는 고객이 있다면, 생년월일이 1980년 10월 20일인 고객은 만 32년 6개월이므로 만 33세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생년월일이 1980년 10월 21일인 고객은 만 32년 5개월 29일이므로 만 32세로 보험료가 계산됩니다

Q) 해약환급금이 기납입 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1. 가입자격제한 등 상품별 특이사항

1) 가입자격제한

① 가입나이

구 분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가입나이	보험료 납입주기
보통약관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특별약관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10/20년	전기납	30~80세	월납연납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간편고지)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일반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5대골절진단(간편고지)				
	5대골절수술(간편고지)				
	일반상해화상진단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일반상해화상수술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간편고지)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간편고지)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간편고지)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간편고지)				
	상해척추손상수술(간편고지)				
	탈구염자및과긴장수술(간편고지)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간편고지)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상해사망(간편고지)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p>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p> <p>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p> <p>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p> <p>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p> <p>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p> <p>대중교통이용중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p> <p>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p> <p>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p> <p>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p> <p>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p> <p>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p> <p>자동차사고부상(1~14급)(비운전자)</p> <p>사동자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p> <p>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p> <p>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p> <p>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p> <p>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p> <p>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p> <p>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p> <p>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p> <p>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p> <p>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p> <p>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p> <p>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비운전자)</p> <p>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p> <p>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p> <p>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p> <p>깁스치료비</p> <p>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p> <p>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p> <p>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p> <p>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p>			
--	--	--	--	--

	<p>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IV(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V(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p> <p>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 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p> <p>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 용)</p> <p>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p> <p>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 한도)(운전자용)</p> <p>운전중사고별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p> <p>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운전자용)</p> <p>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 조사포함)(운전자용)</p> <p>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p> <p>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p> <p>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p> <p>보이스피싱손해</p> <p>(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p>				
제도성 특별약 관	<p>이륜자동차운전및탑승중상해부담보 보험료자동이체납입</p> <p>제재위반 부담보</p> <p>지정대리청구서비스</p> <p>장애인전용보험전환</p> <p>교통사고처리지원금(공탁금 선지급)</p> <p>보험계약 변경 정산액 분할납입</p> <p>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 변호사 직접지 급</p>	최 초	5년	전기납 30세 ~80세	연납 월납
		갱 신	5년	전기납 35세 ~95세	연납 월납

② 보험료 납입주기: 월납, 연납

③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 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상품의 특이사항

① 상품의 특징

(1) 이 상품은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 일반고지형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2) 간편고지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합니다.
- (3) 계약자가 간편고지형 상품 가입 시 회사는 간편고지형 상품과 일반고지형 상품의 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비교하여 안내합니다. 일반고지형 상품의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이 가능한 상품임을 설명하여야 하며, 계약자에게 안내한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4) 계약자가 간편고지형 상품의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일반고지형 상품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회사는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심사를 통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을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5) (4)에 의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줍니다.
- (6) 계약자가 간편고지형 상품 가입 시 회사는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 등 간소화를 통하여 보험요율에 이미 반영된 사항을 인수심사시 계약자에게 불리하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 (7) 계약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일반고지형 상품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간편고지형 상품을 추가로 가입하기 원하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의 표준체 여부를 재심사 하여 일반고지형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해당 일반고지형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8) 회사는 (7)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유병력자임을 알 수 없는 경우, 간편고지형 계약의 청약을 거절합니다.
- ② (보장부분) 적용이율 : 2.50%
- ③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및 납입주기

보험기간	"1.1)의 가입자격제한" 참조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	

④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1) 대상 약관

-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II

(2) 갱신의 운영에 관한 사항

i) 갱신계약 보험료 통보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해당 피보험자의 갱신계약 보험료를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 드립니

다.

ii) 보험료 재산출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위의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시점의 이 계약의 적용기초율(적용 이율, 적용위험률,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및 연령의 변동 등을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3) 보험료 납입방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만기까지 전기간 납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⑤ 아래의 A 특별약관과 B 특별약관은 동시에 가입하여야 함.

	A	B
1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 (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 간매월지급)(운전자용)
2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 (비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 간매월지급)(비운전자용)
3	· 상해MRI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간편고지)	· 상해C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간 편고지)

⑥ 아래의 A 특별약관은 B 특별약관중 하나의 특별약관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함.

	A	B
1	· 상해관절(무릎·고관절)손상수술(간편고 지)	·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2	· 상해척추손상수술(간편고지)	
3	· 탈구염좌및과긴장수술(간편고지)	
4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1 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 상해간병인사용입원일당(요양병원제 외)(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5	· 5대골절진단(간편고지)	·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간편 고지)
6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 골절진단의료비용(치아파절제외)(간편 고지)
7	· 5대골절수술(간편고지)	·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8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⑦ 아래의 A 특별약관은 B 특별약관과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A	B
1	· 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2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 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 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3	·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⑧ 아래의 각 그룹단위별 보장특약은 동시에 가입할 수 없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증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증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증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증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증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 1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⑨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운전자만 가입 가능함.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자가용)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⑩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및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담보의 경우 영업용 운전자에 한하여
부가 가능함

⑪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비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사망(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뺑소니무보험차교통상해50%이상후유장해(자가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 심급별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 운전중보복운전피해보장(운전자용)
- 면허정지보험금(영업용)
- 면허취소보험금(영업용)

⑫ 아래의 특별약관의 경우, 자가용, 영업용 운전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사고부상(1~14급)(비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
- 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
-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13)

(14) 당사 기가입자 보험료 할인

(1) 할인대상

이 계약의 계약자가 계약체결시점에 당사 장기보험/자동차보험/일반보험(1년미만 단체 또는 제휴보험 제외)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다만, 계약체결당시 유효한 계약에 한함)

(2) 할인금액 및 할인적용방법

계약체결시점에 할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초회보험료부터 영업보험료의 3% 할인을 적용함.

(15) 이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보험입니다.

2.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1)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기본 계약	일반상해80% 이상후유장해 (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선택 계약	상해사망 (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골절진단의료비용 (치아파절제외) (간편고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장 (단, 치아파절 제외)	약관에서 정한 골절진단지급률표에 따라 지급
	5대골절진단(간 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확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5대골절진단(운전자용)	정된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단,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지급)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5대골절수술(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교통상해5대골절수술(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응급실내원비(응급)(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매 내원시마다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응급실 도착 전 사망하였거나 병원을 옮겨 상해로 인한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함	응급실 내원 1회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깁스치료비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긱스(Cast)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매 사고시마다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 MRI 검사지원비(급여,연간 1회한도)(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급여 MRI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이 특별약관의 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 CT 검사지원비(급여,연간 1회한도)(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약관에서 정한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 연간 1회한도로 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하여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되어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단, “권역외상센터” 도착 전 사망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동일한 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장	
	탈구염좌및과긴 장수술(간편고 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탈구, 관절 및 인접근육의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에서 정한 탈구, 염좌 및 과긴장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척추손상수 술(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해 척추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척추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관절(무릎· 고관절)손상수 술(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상해 관절(무릎·고관절)손상 분류표에서 정한 관절(무릎·고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단, 동일한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비만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종환자 실입원일당(1 일 이상 180 일한도 (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환자실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 일당 보험가입금액
	일반상해종합병 원입원일당(1 일 이상 180 일한도 (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종합병원에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 일당 보험가입금액
	중대한특정상해 수술(뇌,내장손 상)(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중대한특정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중대한특정상해 : 1. 뇌손상: 두부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 정한 뇌에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두 수술을 받은 경우 2. 내장손상: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중대한특정상해분류표에 정한 내장의 기관에 기질적 손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개흉 수술 또는 개복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화상진 단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																
	일반상해화상수술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는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간편고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에서 정한 수술 및 시술을 입원하여 받은 경우에는 1~8종(시술포함) 상해수술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 단,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시술코드당 연간 1회에 한하여 보장	수술 및 시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x 수술 종별 지급률 (1회의 입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															
	자동차사고성형수술(자가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마다 가입금액을 지급 (단,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자동차사고부상(1~14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1~14급) 지급금액을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1~11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1~11급) 지급금액을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10만원 ~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1~3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 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table border="1"> <tr> <td>피해자 사망시</td> <td colspan="2">3,000만원 한도</td> </tr> <tr> <td>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td> <td colspan="2"></td> </tr> <tr> <td>피해자 42일</td> <td>42일~69일</td> <td>1,000만원 한도</td> </tr> <tr> <td>이상</td> <td>70일~139일</td> <td>2,000만원 한도</td> </tr> <tr> <td>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td> <td>140일 이상</td> <td>3,000만원 한도</td> </tr> </table>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42일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이상	70일~139일	2,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40일 이상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사망시	3,000만원 한도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 교통사고)																		
피해자 42일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이상	70일~139일	2,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140일 이상	3,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 II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	피해자 5,000만원 한도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table border="1"> <tr> <td>사망시</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td><td></td></tr> <tr> <td>중상해시</td><td></td><td></td></tr> <tr> <td>(일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42일~69일</td><td>1,000만원 한도</td></tr> <tr> <td>42일 이상</td><td>70일~139일</td><td>3,000만원 한도</td></tr> <tr> <td>진단시</td><td></td><td></td></tr> <tr> <td>(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140일 이상</td><td></td><td>5,000만원 한도</td></tr> </table>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3,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5,000만원 한도			
사망시																																	
피해자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3,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5,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table border="1"> <tr> <td>피해자</td><td></td><td></td></tr> <tr> <td>사망시</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td><td>7,000만원 한도</td></tr> <tr> <td>중상해시</td><td></td><td></td></tr> <tr> <td>(일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42일~69일</td><td>1,000만원 한도</td></tr> <tr> <td>42일 이상</td><td>70일~139일</td><td>4,000만원 한도</td></tr> <tr> <td>진단시</td><td></td><td></td></tr> <tr> <td>(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140일 이상</td><td></td><td>7,000만원 한도</td></tr> </table>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7,000만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4,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7,000만원 한도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7,000만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4,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7,000만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table border="1"> <tr> <td>피해자</td><td></td><td></td></tr> <tr> <td>사망시</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td><td>1억원 한도</td></tr> <tr> <td>중상해시</td><td></td><td></td></tr> <tr> <td>(일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42일~69일</td><td>1,000만원 한도</td></tr> <tr> <td>42일 이상</td><td>70일~139일</td><td>5,000만원 한도</td></tr> <tr> <td>진단시</td><td></td><td></td></tr> <tr> <td>(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td><td></td><td></td></tr> <tr> <td>140일 이상</td><td></td><td>1억원 한도</td></tr> </table>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1억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5,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1억원 한도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1억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42일~69일	1,000만원 한도																															
42일 이상	70일~139일	5,000만원 한도																															
진단시																																	
(중대법규위반교통사고)																																	
140일 이상		1억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매 사고마다 피해자 각각에 대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형사합의금 지급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table border="1"> <tr> <td>피해자</td><td></td><td></td></tr> <tr> <td>사망시</td><td></td><td></td></tr> <tr> <td>피해자</td><td></td><td>2억원 한도</td></tr> <tr> <td>중상해시</td><td></td><td></td></tr> <tr> <td>(일반교통사고)</td><td></td><td></td></tr> </table>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2억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피해자																																	
사망시																																	
피해자		2억원 한도																															
중상해시																																	
(일반교통사고)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table border="1"> <tr> <td>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td><td>42일~69일</td><td>2,000만원 한도</td></tr> <tr> <td></td><td>70일~139 일</td><td>8,000만원 한도</td></tr> <tr> <td></td><td>140일~17 4일</td><td>1억원 한도</td></tr> <tr> <td></td><td>175일 이상</td><td>1억5천만 원 한도</td></tr> </table>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일	2,000만원 한도		70일~139 일	8,000만원 한도		140일~17 4일	1억원 한도		175일 이상	1억5천만 원 한도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시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	42일~69일	2,000만원 한도													
	70일~139 일	8,000만원 한도													
	140일~17 4일	1억원 한도													
	175일 이상	1억5천만 원 한도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 대법규위반,동 승자포함,6주미 만)(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이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 21일 미만 진단 시 : 150만원 한도, 21~41일 진단 시 : 500만원 한도												
	운전중 교통사고처리지 원금Ⅱ (중대법규위반, 동승자포함,6주 미만) (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중대법규위반 자동차 사고로 타인(동승자를 포함하나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이 42일(피해자 1인 기준) 미만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사고당) 21일 미만 진단 시 : 150만원 한도, 21~41일 진단 시 : 1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인)(3천 만원한도)(운전 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3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벌금 (대인)(2천만원 초과,1천만원한 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1천만원 한도 (단, 벌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운전중사고벌금 (대인)(2천만원 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2천만원 한도												
	운전중사고 벌금(대물)(운전 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자동차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와 관련하여 받은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사고 제외	(1사고당) 5백만원 한도												
	심급별운전중사 고변호사선임비 용(특정사고경 찰조사포함)(운 전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아래의 경우로 실제로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 보장 (단, 음주, 무면허, 약물, 도주 사고 제외)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소송의 심급별 500만원 한도 (소송의 심급별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의 50% 공제)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2.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약식명령 불복 제외)하게 되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한 경우(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	
	운전중보복운전 피해보장(운전 자용)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약관에서 정한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단, 하나의 보복운전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하나의 보복운전당) 보험가입금액
	보이스피싱손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사고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또는 지출한) 경우	실제 금전손해액의 70% (가입금액 한도)
	면허정지보험금 (영업용)	보험기간 중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일시 정지되었을 경우 보장	면허정지기간 ^{주3)} 동안 최고 60일을 한도로 1일당 보험가입금액
	면허취소보험금 (영업용)	보험기간 중 영업용 자동차 운전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상함으로써 피보험자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행정처분에 의해 취소되었을 경우 보장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갱신형)가족일 상생활 배상책임II	보험기간 중 아래 열거한 사고로 타인(피해자)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실제 입은 손해 보상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하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를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대인/대물 각각 자기부담금 20만원, 누수의 경우 면책90일 자기부담금 50만원)	1억원 한도
	민사소송법률비 용손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보상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상벌금 비용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에 따른 벌금형(단, 특별법 위반을 포함한 벌금형은 제외)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1사고마다 2,000만원을 한도로 벌금형에 해당하는 금액(확정판결에 따라 정해진 벌금액을 말하며,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을 지급	1 사고당 벌금액 (단, 2,000 만원 한도)
	교통상해사망(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	교통상해사망(체증형, 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금 ^{주2)} X 60회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 입원일당(1일이상 180일한도)(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주4)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금주2)X 60회
	교통상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사망후 유장해(3~100%)	보험기간 중 승객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대중교통 이용중 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 사망후유장해(3~100%)(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신주말주4)에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고속도로교통상 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
	운전중뺑소니무 보험차상해사망(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
	운전중뺑소니무 보험차상해80% 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운전중뺑소니무 보험차상해50% 이상후유장해(운전자용)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자동차사고부상 (1~14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1~14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5만원 ~ 500만원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지급금액을 지급	
	자동차사고부상(1~11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에 기재된 부상등급 별(1~11급)지급금액을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가입금액 500만원 기준) - 부상등급별 : 10만원 ~ 500만원
	자동차사고부상(1~3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자동차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등급(1~3급)을 받은 경우 보장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약관상의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 중 1~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	교통상해80%이상 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금주2) X 60회
	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1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종합병원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이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장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최초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신주말주4)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일당)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5년간 매월 사고발생 해당일에 지급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보험금주2) X 60회
	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3~100%)(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장해지급률
	신주말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3~100%)(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신주말주4)에 비운전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장	신주말교통상해사망보험금 : 보험가입금액 신주말교통상해후유장해보험금 : 보험가입금액×후유장해지급률
	고속도로교통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 중 약관에서 정한 대한민국내의 고속도로상에서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
	뺑소니무보험차상해사망(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장	보험가입금액
	뺑소니무보험차상해8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최초 1회한)
	뺑소니무보험차상해50%이상후유장해(비운전자)	보험기간 중에 비운전 중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에 의한 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최초 1회한)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변호사비용 : 1,500만원 한도 (심급별 하나의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해	정한 소송사건 중 '자동차사고 손해배상 소송'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을 약관에 따라 보상	소송당 자기부담금 10만원 공제) 인지액+송달료 : 500만원 한도						
	업무상과실·중 과실치사상변호 사선임비용	보험기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중과실 치사상)을 죄명으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되었거나,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 단, 약식 기소 제외) 된 경우 또는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하게 된 경우에는 변호사선임비용으로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1사고마다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단,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음. 단, 형법 제268조의 특별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제외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상해간병인사용 입원일당(요양 병원제외)(1일이 상1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td><td>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td></tr> <tr> <td>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50%</td><td>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100%</td></tr> </tbody> </table>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50%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100%
지급금액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50%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 액의 100%								
	상해간병인사용 입원일당(요양 병원)(1일이상1 8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원 일당(1일이상18 0일한도)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단,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의 100%						
	일반상해상급종 합병원수술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 합병원에서 수술 시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구분	보장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 주1) 상기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의 세부사항은 약관 참조
- 주2) 교통상해사망(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교통상해80%이상후유장해(체증형,5년간매월지급)(운전자용) : 보험가입금액을 매년 2.5% 연복리로 체증한 금액(각 약관의 보험가입금액 별 예시 참조)
- 주3) 면허정지기간은 도로교통공단의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여 전체 면허정지기간에서 감경 받았거나 감경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을 말함.
- 주4) 신주말이란, 사고발생지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금요일, 토요일,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 또는 근로자의 날을 말함.

2)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①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②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시 불이익 사항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만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알렸을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되지 않음은 물론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③ 이 상품의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 처리지원금Ⅱ(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Ⅲ(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Ⅳ(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Ⅴ(중상해포함,동승자포함)(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교통사고처리지원금Ⅱ(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6주미만)(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3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초과,1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인)(2천만원한도)(운전자용), 운전중사고벌금(대물)(운전자용), 심급별운전중사고변호사선임비용(특정사고경찰조사포함)(운전자용), 보이스피싱손해, (갱신형)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Ⅱ, 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자동차사고민사소송법률비용손해,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벌금비용, 업무상과실·중과 실치사상변호사선임비용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약관에 따라 비례보상됩니다.

다수계약이란?

다수계약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은 제3보험의 상해·질병·간병보험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 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④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

이는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보험료산출기초

1) 보험료의 구성

보험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금지급을 위한 위험보험료, 만기 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한 적립보험료,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2) 적용이율

이 상품의 보장부분 적용이율은 연단위 복리 2.50%입니다.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율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3) 적용위험률

적용위험률이란?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적용위험률이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고 낮으면 보험료는 내려갑니다.

<적용위험률 예시>

(기본계약, 남자 40세 및 여자 40세, 상해1급 기준)

담 보 위 험	적용위험률	
	남자	여자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0.000031	0.000012

4)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이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험료 중 일정비율을 책정한 것을 말합니다.

4. 보험가격지수

- 산출식 : “영업보험료 ÷ (참조순보험료+상품군별 평균사업비) × 100”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방식은 손해보험상품 비교공시자료시행세칙 I. 장기순해보험상

품 비교.공시자료 작성지침 “6.보험가격지수 비교·공시” 준용)

보험가격지수란?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과 평균사업비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보험 가격지수”라고 합니다.

* 금융감독원이 정하는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 상품군별로 손해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보험가격지수 예시>

[기준 : 40세, 상해 1급, 월납, 20년만기, 20년납

필수가입담보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주요특약(5개) : 상해사망(간편고지) 보험가입금액 1억원,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보험가입금액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보험가입금액 50만원]

보험가격지수	
남자	여자
197.3%	233.7%

주) 간편고지상품의 경우 표준체 상품 대비 보험가격지수가 높을 수 있음

5. 계약자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상품으로서 배당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배당 상품은 배당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6.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1) 해약환급금 산출기준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이 인가한 산출기준에 따라 계산한 이 보험의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2) 해약환급금

- 가입기준 : 남자, 40세, 월납 22,890원, 20년만기, 20년납
- 기본계약 : 일반상해80%이상후유장해(간편고지) 1억원
- 선택계약 : 상해사망(간편고지) 1억원, 일반상해수술(간편고지) 20만원, 상해수술(1~8종)(시술포함)(간편고지) 2,000만원, 일반상해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간편고지) 20만원, 일반상해골절수술(간편고지) 50만원, 5대골절진단(간편고지) 20만원, 5대골절수

술(간편고지) 50만원, 일반상해화상진단 20만원, 일반상해화상수술 50만원, 중증외상치료비(권역외상센터)(간편고지) 500만원, 중대한특정상해수술(뇌,내장손상)(간편고지) 100만원, 일반상해입원일당(1일이상180일한도)(간편고지) 2만원

(단위 : 원,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	예상해약환급금	환급률
1년	274,680	-	0.0%
3년	824,040	-	0.0%
5년	1,373,400	1,100	0.1%
10년	2,746,800	238,360	8.7%
15년	4,120,200	170,130	4.1%
20년	5,493,600	-	0.0%

3) 해약환급금이 적은 이유

손해보험상품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기능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재원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업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품요약서는 상품의 주요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